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04
----------	------

발의연월일 : 2023. 4. 27.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신동윤 의원, 김보경 의원

##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조례 내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 인용 등을 통해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개정절차를 줄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여비 지급방식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상위법령 별표 인용 및 별표 1 삭제(안 제4조)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금액 강화(안 제5조)

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6조)

##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공무원 여비 규정」,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급” 을 “일괄 지급” 으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1” 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2배” 를 각각 “5배” 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 를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 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p> <p>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p> <p>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p> <p>1. ~ 3. (생략)</p> <p>4. 규정 제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 ————— ————— 일괄 지급—————.</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p> <p>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 ————— 5배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5배 —————.</p> <p>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공용차</p>

「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 8. (생략)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  
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  
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  
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  
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  
로 본다.

「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_\_\_\_\_.

5. ~ 8. (현행과 같음)

9. \_\_\_\_\_

\_\_\_\_\_

\_\_\_\_\_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지방공무원법」 [2022.12.27. 일부개정 · 시행]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무원 여비 규정」 [2023. 3. 2. 일부개정 · 시행]

##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1일당)
제1호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022. 10. 11. 일부개정 · 시행)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